
2019년 2분기 예비비 사용보고

2019. 8.

기 획 조 정 실

2019년 2분기 기획조정실 예비비 사용 보고

사망직원의 유가족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하고 보고드립니다

사건 개요

- 사 건 명 :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머520932 손해배상(기)
- 신 청 인 : 김00, 문00(대리인 : 변호사 권영국 외 2인)
- 피신청인 : 서울특별시 대표자 박원순(대리인 : 법무법인 수륵아시아)
- 소송경과
 - '17. 09.18. : 사망사건 발생
 - '19. 03.19. : 조정신청서 송달(접수일 : 3.5.)
 - '19. 04.30. : 제1차 조정 진행
 - '19. 05.20. :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정본(강제조정) 송달
 - ▶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4억 2천만원을 2019.7.31.까지 지급
 - '19. 06.11. : 확정(강제조정결정에 대해 쌍방 이의하지 않음에 따라 확정)

예비비 사용 사유

- 서울중앙지방법원 『2019머520932 손해배상(기) 강제조정결정』에 따라 '19.06.20. 신청인들의 청구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'19.06.26. 4억2천만원의 예비비 사용

예비비 사용 내역

(단위 : 천원)

부서명	예산과목		예산액	금회 지출액	
	세부사업	통계목		증	감
예 산 담 당 관	예비비	일반예비비 (801-01)	186,336,423	-	△420,000
예 산 담 당 관	손해배상금 지급	배상금 등 (305-01)	-	420,000	-